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28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윤종오 · 한준호 · 전종덕
손 솔 · 황운하 · 김재원
허성무 · 김현정 · 김종민
정혜경 · 김준형 · 임미애
한창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동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보험상 보호의 제도적 단절은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변화된 고용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 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업에 따른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임.

이에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는 고용보험의 핵심서비스인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노동 참여를 뒷받침하고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참고사항

이 법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47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3항 중 “65세 이후에 고용”을 “70세 이후에 고용”으로, “사람이 65세”를 “사람이 70세”로 한다.

제23조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로 한다.

제77조의2제2항제1호 중 “65세”를 각각 “70세”로 한다.

제77조의6제2항제1호 중 “65세”를 각각 “70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을 할 수 있다.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3. (생략)

③ ~ ⑥ (생략)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70세-----

-----70세-----
-----70세-----

2.·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
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
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
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
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
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3. (생략)

③·④ (생략)

-----.

1. 70세-----

-----70세-----
-----70
세-----

2.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